
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인컴바닐라 EMP 분기지급형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 사항 :

-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② 용어 변경("대차대조표" → "재무상태표", "제O영업일" → "O영업일")

3. 시행일 : 2022년 01월 07일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4 조(집합투자 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제 2 항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제 48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제 2 항제 2 호	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u>(법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u>
부칙	-	<u>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